

당사의 행동강령

1. 당사의 행동강령 소개

우리는 전 세계의 사업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한결 같은 최고 수준의 윤리 및 사업수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률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의 법률이 당사의 정책 중 하나와 대립될 수 있으며 당신은 매니저 또는 당사의 법률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록C).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는 - 우리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 사업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든 직원, 관리인 및 Donaldson 회사, 자회사, 사업단위, 제휴사 및 Donaldson의 대부분 소유권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관리 제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합작기업의 이사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해당 법률, 당사의 행동 강령 또는 당사 정책의 위반사항을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울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Donaldson 주식회사 및 자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Donaldson” 또는 “회사”로 불리어 집니다. “이사”라는 용어는 회사 이사회회의 이사를 가리킵니다. “관리인”이라는 용어는 회사의 회장, CEO 및 모든 상무와 부회장을 가리킵니다. “직원”이라는 용어는 회사에서 시간당, 전직, 파트타임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들과, 임시 및 계약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2. 차별과 괴롭힘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개인의 존엄성, 개인정보 및 각 개인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 또는 당사와 거래하는 외부인들로부터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취향, 성적체성, 결혼 여부, , 장애, 병역이나 기타 적용이 가능한 보호상태에 관련된 차별 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초래하거나 용납할 경우도 정책의 위반에 속합니다.

3.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

회사의 모든 자산 및 기밀정보를 반드시 보호하는 것도 당사의 정책입니다. 정보 이용자 또는 소유자인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원을 악용, 절도, 사기 또는 분실 및 무단 사용, 공개, 또는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 또는 기밀 정보를 개인적인 혜택이나 이용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전자 자료 및 통신 보호

우리는 전자 및 음성 통신장비와 당사의 사업 행위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시킵니다. 당사에서 생성하고, 전송하였거나 또는 당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였거나 당사의 장비를 이용한 당사의 장비 및 시스템과 전자 또는 음성 파일은 회사의 자산에 속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이상, 저희는 회사의 시스템 및 장비와 파일의 내용물 및 당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당사의 장비로 생성하고, 전송하였거나 접수한 통신 사용에 접속, 감시, 기록, 검토 및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이용할 경우, 직원들은 회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동의를 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원들이 당사의 시스템장비나 인터넷을 통하여 생성하고, 전송하거나 받은 정보들은 모두 기밀로 처리됩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통신은 당사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검색도 가능합니다. 당사의 IT 안전사용 정책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MyDCI 또는 여러분의 매니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이익의 상충

직원들은 반드시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되거나 갈등을 만들 수 있는 활동, 이익 및 제후를 피해야 합니다. 이익의 상충은 금융이 다른 조직이거나 Donaldson과 거래를 하는 개인과 대면할 때 찬성할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직원들은 이익의 상충을 수반하는 모든 상황에 직면할 경우, 반드시 당사의 준수 위원회(부록 A)에게 서신으로 즉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기타 직원들이 참여한 이익의 상충으로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행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익의 상충이 존재하는 여부에 대하여 당사의 준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6. 정확한 장부 및 기록

정확하고 입증 가능한 업무 기록을 준비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회사의 모든 기록에서 의도적인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이거나 은폐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사의 사업 목적에 필요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기간 동안에 제공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MyDCI 또는 귀하의 매니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당사의 회계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7. 공중, 미디어 및 분석가들에게 공개한 정보

회사에 대한 자료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적시적이며, 일관되게 공개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비공식적인지에 상관없이 전달되는 모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외부의 개인과 오직 회사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인 지정된 대변인을 임명함으로써 정보의 공개에 집중해 왔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정된 대변인의 목록은 부록 B에 올라와 있습니다.

8. 내부 교육

어떠한 직원, 관리인 또는 이사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소유하게 될때 회사의 주식(주식인수권을 포함)을 매입하거나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전체 거래일 1일 동안에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회사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 관리인 및 이사들은 회사 증권거래를 금지하거나 회사증권을 거래하는 다른 이들에게 정보공개를 금지합니다. 불법 거래의 출현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관리인과 이사들은 오직 회사의 법무 자문위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회사 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제한 범위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록C).

그 외에도, 만약 , 직원, 관리인 또는 이사가 Donaldson 과 함께 일해 왔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이 직원,관리인 또는 이사는 이 회사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이 정보를 이용한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적절한 거래로 보이는 행위도 행동의 최고 수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당사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9. 공정 경쟁법 및 경쟁적 관행

당사가 위치하였거나 사업을 하는 국가의 모든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공정 경쟁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독점금지법 및 공정경쟁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지적 재산 및 타인의 정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입니다. 이 공정성에 대한 약속은 당사의 제공업체, 고객, 경쟁업체 및 다른 이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타인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을 훔치거나 악용할 수 없습니다.

11. 구매

우리의 명성은 당사의 구입관행의 정직성에 달려 있습니다. 제조업체든 아니면 공급업체든 상관없이 당사에 최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해당 법률에 기반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비용, 품질, 정시 배달 및 서비스 등은 고려되어야 하기에 적합한 사업들입니다.

12. 선물, 사례금 및 접대

우리는 선물, 사례금, 접대 또는 기타 유인책을 부적절히 이용하여 모든 이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직원들의 명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훌륭한 판단력과 적당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뇌물을 제공하고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직원들과 그들의 직계가족들은 오직 당사의 선물정책 (MyDCI 또는 당신의 매니저를 통해서)에 명시된 규칙에 부합될 때 식사, 오락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선물은 절대로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CEO 또는 CFO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선물, 식사 또는 접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 조사 및 인터뷰

우리 회사와 직원들이 가능성 있는 법 위반에 관한 정부 조사에 지체 없이 그리고 충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정부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조사관(내부 또는 외부)과의 접촉은, 정상적인 당사의 영업 중에 허가,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통례적으로 필요한 접촉을 제외하고는, 법무실(부록 C)과 상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정부 접촉이 통례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직원의 정규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무실에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의 어떤 것도 직원이 정부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조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정부 조사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이는 그러한 행동이 내부고발자 보호 또는 해당 법의 기타 유사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14.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저희 정부 및 상업적 관계에서 뇌물 및 부패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입니다. Donaldson은 뇌물, 부패, 또는 모든 유형의 비윤리적 관행을 금지합니다.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법은 저희가 유리한 사업 처리를 유도하거나 또는 사업이거나 정부의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가치가 있는 물건**(규모에 상관없이)을 약속,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해외부정지불 방지법(FCPA)은 불공평한 사업 이점을 획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미국 공무원, 정치인이거나 정당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제공하거나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이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외 부정지불 방지법은 정확한 장부 및 기록

정책을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영국 뇌물법은 상업적 뇌물을 포함한 모든 뇌물 제공을 전 세계에서 널리 있는 당사의 모든 회사에서 금지합니다.

“뇌물”은 현금, 기부금, 대출, 여행비용, 선물, 사례비, 접대, 또는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리베이트”는 부적절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지불한 금액이거나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의 상환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부패 또는 뇌물을 지원하는 행위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15. 정부관계

언제나 공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정부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저희는 모든 규정 및 연락처와 정부 규제 및 직원들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을 완벽히 준수하며 사업 행위의 최고 수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반드시 정치인이거나 정부 직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호의를 약속하고,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반드시 모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직원을 접대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당사의 법무 부서의 사전동의가 없이 기존 또는 이전의 정부 직원 또는 그들의 직계가족에게 회사 고용 제안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부록C).

16. 행정계약

정부와의 계약은 당사 사업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부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회사직원들이 엄격하게 모든 정부 계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17. 환경 제도화

모든 해당 환경제도화를 준수하고 당사의 직원들과 일반대중들이 환경적 피해를 받는 것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당사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또한, 적절한 계획, 절차, 및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유지시키고 해당 환경 제도화를 준수하는 것도 당사의 책임입니다.

18. 정부 관계, 정치 헌금 및 활동

정치 헌금 및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직원들은 당사의 법무 부서의 사전동의가 없이 회사의 자금, 재산으로 된 정치 헌금이거나 서비스를 선출된 공무원, 정당 또는 위원회 또는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부록C) . 직원들이 정치헌금을 제공하거나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또는 정치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압력은 없습니다.

19. 보이콧 법규

당사가 위치하였거나 사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상국에서 사업행위를 함으로써 외국정책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보이콧 활동). 당사의 법무 자문위원회와의 상담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부록 C). 직원들은 반드시 당사의 법무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안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 세계 무역

모든 해당 수출입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모든 시설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곳의 현지 규정 외에도 미국의 수출 및 재수출 통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무는 고위 경영진에서부터 당사 제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당사 및/또는 당사 직원들에게 엄중한 처벌, 부정적인 언론 보도, 선적의 지연 또는 압수, 수입 및 수출 특권의 상실 및/또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 행동강령 권한 및 감독

법준수를 감독, 시행, 감사하고 당사의 행동강령을 감시하는 책임은 당사의 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당사의 준법위원회 구성원은 당사의 CEO가 임명합니다. 당사의 준법위원회 구성원들의 이름 및 연락처는 부록 A에서 제공합니다. 당사의 준법위원회는 당사의 행동강령에 대한 질문 또는 해석에 대하여 최종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강령의 성공을 감시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직원들이 당사의 준법위원회 또는 준법 상담전화를 통하여 당사의 행동강령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 입니다(부록 D).

22. 행동강령 교육 및 증서

우리의 행동강령은 반드시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시, 모든 직원들이 당사의 행동강령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직원은 반드시 행동강령을 읽어 보았고 이해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정책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강령은 모든 매니저들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모든 매니저들이 행동강령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할 때 그 내용을 읽어 보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매니저들로부터 작업 지역에 관련된 회사의 특정 정책을 제공받게 됩니다. 매니저 들은 자기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작업 지역에 적용된 회사의 모든 특정 정책에 접속이 가능하고 또 그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3. 위반 행위 신고 및 조사하기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해당 법률, 당사의 행동강령 또는 당사의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반드시 직원의 매니저, 준법위원회(부록A), 당사의 법무 부서 (부록C) 또는 내부감사 (부록A)에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위반 사항을 당사의 준법상담전화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록D). 상담전화를 사용하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당사의 준법위원회에서 신고서를 조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4. 내부 고발자 및 비보복

법률, 당사의 행동강령 또는 회사의 모든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신고서를 즉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선의의 위반행위거나 의심하고 있는 법 또는 당사의 행동강령 또는 당사의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직원들은 보복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며 신고 이후에 징계를 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선의적으로 위반행위거나 의심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심각한 위반 행위에 속하며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반드시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보복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5.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적절한 징계조치를 통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당사의 행동강령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입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 또한 당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법률, 당사의 행동강령 또는 당사의 모든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받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직원이 위반 행위에 참여했다고 결정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준법위원회의 책임이며 이런 경우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합리적이고 일치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의 정책입니다.

부록 A

준법위원회

회장: Steve Moon
글로벌 윤리 및 준수 이사
Steve.Moon@donaldson.com
+1 952-887-3099

Amy Becker
부회장, 법무자문위원 및 비서
Amy.Becker@donaldson.com
+1 952-887-3984

Guillermo Briseño
라틴 아메리카 부통령
Guillermo.Briseno@donaldson.com
+52 449-3002415

Sheila Kramer
VP, 인적자원부
Sheila.Kramer@donaldson.com
+1 952-887-3676

내부감사

Lisa McClelland
이사, 내부감사
Lisa.McClelland@donaldson.com
+1 952-887-3564

James Michael
내부 감사 매니저, 미국
James.Michael@donaldson.com
+1 952-887-3978

Joseph Lu
수석 내부감사 매니저, APAC
Joseph.Lu@donaldson.com
+65 6311 8488

Bart Moesen
수석 내부감사 매니저, EMEA
Bart.Moesen@donaldson.com
+32 16 383794

부록 B

회사 대변인

Tod Carpenter

의장

회장 및 CEO

Tod.Carpenter@donaldson.com

+1 952-887-3267

Scott Robinson

수석 부사장, CFO

Scott.Robinson@donaldson.com

+1 952-887-3489

Amy Becker

부회장, 법무자문위원 및 비서

Amy.Becker@donaldson.com

+1 952-887-3984

Brad Pogalz

투자자 관계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

Brad.Pogalz@donaldson.com

+1 952-887-3753

Becky Cahn

기업 홍보 이사

Becky.Cahn@donaldson.com

+1 952-703-4590

부록 C

법무부서

미국

Amy Becker

부회장, 법무자문위원 및 비서

Amy.Becker@donaldson.com

+1 952-887-3984

Nancy Lambert

수석 법률고문

Nancy.Lambert@donaldson.com

+1 952-887-3238

Carissa Anderson

수석 법률고문

Carissa.Anderson@donaldson.com

+1 952-887-3065

아시아 태평양

Jerry Wei

법무보좌관

Jerry.Wei@donaldson.com

+86 21 23137113

□□

Michio Kuroki

법률 및 신용 이사

Michio.Kruoki@donaldson.com

+81 42 540 4118

유럽

Saskia Sterckx

법무보좌관

Saskia.Sterckx@donaldson.com

+32 16 383811

남아프리카

Dipan Ambaram

법무보좌관

Dipan.Ambaram@donaldson.com

+27 (011) 997 6057

부록 D

준수 상담전화

호주	1-800-339276
오스트리아	0800-291870
벨기에	0800-77004
버뮤다	1-866-737-6850
브라질	0800-8911667
불가리아	00-800-0010; then at prompt dial 888-366-6031
캐나다	888-366-6031
캐나다	855-350-9393
칠레	1230-020-5771
중국 (남방)**	10-800-712-1239
중국 (북방)**	10-800-120-1239
콜롬비아	01800-9-155860
체코 공화국	800-142-550
덴마크	80-882809
핀란드	0800-1-14945
프랑스	0800-902500
독일	0800-1016582
홍콩	800-964214
헝가리	06-800-17199
인도	000-800-100-1071
인도	000-800-001-6112
인도네시아	001-803-011-3570
인도네시아	007-803-011-0160
아일랜드	1-800615403
이탈리	800-786907
일본/J5	0066-33-112505
일본/JP	00531-121520
한국/K2	00308-110-480
한국/KO	00798-1-1-009-8084
한국(남)	00798-14-800-6599
말레이시아	1-800-80-8641
멕시코 (M1-M5)	001-866-737-6850
멕시코(새로운)	001-800 840 7907
네델란드	0800-0226174
뉴질랜드	0800-447737

노르웨이	800-15654
페루	0-800-50-000; then at prompt dial 888-366-6031
페루	0-800-50-288; then at prompt dial 888-366-6031
페루	0-800-70-088; then at prompt dial 888-366-6031
필리핀	1-800-1-114-0165
폴란드	0-0-800-1211571
루마니아	0808-03-4288;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러시아	8-10-8002-6053011
사우디 아라비아	1-800-10;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싱가폴	800-1204201
슬로바키아	0800-001-544
남아프리카	080-09-92604
스페인	900-991498
스웨덴	020-79-8729
스위스	0800-562907
대만	00801-13-7956
태국	001-800-12-0665204
터키	0811-288-0001;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아랍 에미리트	800-555-66;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아랍 에미리트	8000-021;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영국	0800-032-8483
미국	888-366-6031
베트남	1-201-0288; then at the prompt dial 888-366-6031

전화번호는 가끔씩 바뀌게 됩니다. 전화번호가 틀릴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행동강령 및 사업진행 상담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19744/index.html>.

** 통화 시 다음과 같은 표준으로 기록된 인사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윤리 신고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 시 저희가 통역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3분정도가 걸리니 전화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